

## □ 서대문구 계약원가 심사기준

### ○ 심사내용 및 금액

심사 내용	심사대상 기준금액
원가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사 : 추정금액 <b>2천만원 이상</b></li> <li>• 용역 : 추정금액 <b>1천만원 이상</b></li> <li>• 물품 : 추정금액 <b>1천만원 이상</b></li> </ul> ※ 시비 재배정사업, 국비·시비 보조사업 (간주처리 및 교부금) 포함
설계변경 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%이상 증가하는 경우</li> <li>• 계약금액 5천만원 미만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20%이상 증가하는 경우</li> </ul>
원가사전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의 공사</li> </ul>

※ 동주민센터의 경우 일상경비 등 1회 지출액이 심사대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계약원가 심사대상임.

※ 추정금액 : 도급비, 관급자재비,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한 금액

- 당초 원가심사 대상은 아니지만, 설계변경 심사대상이면 설계변경심사  
(예 : 계약금액 2천만원 ⇒ 설계변경금액 3천만원)
- 설계변경 심사대상의 **계약금액은 하나의 계약건에 대한 총 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임.**  
(예 :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“계약금액은 연도별 체결하는 차수 계약금액이 아닌 총 공사금액임)
- 신규비목이 없는 단순 물량 증·감 사항이라도 계약금액의 설계변경 심사 대상이면 설계변경 심사 대상임.
- 설계변경 계약원가심사 의뢰전 설계변경시 검증절차 의무적이행 및 변경계약 의뢰시 제비율 검증결과서 첨부 ⇒ 기 시행한 기술심사담당관-13447호(2010.10. 7) “설계변경시 활용할 제비율 검증프로그램 보급 및 시행” 공문 참조

○ 심사제외
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조달발주사업
-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
- 서울시에서 「기술용역 타당성심의」를 받은 기술용역 등
-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(예 : 협상에의한 계약, 개산계약 등)
- 천재지변,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원가 심사가 불가능한 사업
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□ 서울시 계약원가 심사기준

심사대상	공 사		용 역		물품의 제조·구매
	일반 공사 (토목, 건축)	조정,전기, 통신,설비공사	기술용역	일반(학술)용역	
시비재배정사업 및 국비·시비 보조사업 (간주처리 및 교부금포함)	5억원이상	3억원이상	2억원이상	1억원이상	2천만원이상

- ① 원가심사 대상 사업 및 설계변경심사 대상 사업 등은 「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」 등을 준용하며, 복합사업의 경우 비율에 관계없이 심사대상 금액이상 이면 심사대상에 포함됨.(※ 추정금액기준이며, 이설비는 제외한 금액.)
- ② 설계변경심사 대상 사업은 계약금액 20억원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액 (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)이 당해 계약금액의 10%이상 증가하는 경우(계약금액 ⇒ 총공사금액,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⇒ 연도별 체결(차수별 계약)금액)
  - ※ 계약금액에 시비재배정 및 국비·시비보조금(간주처리 및 교부금포함)이 비율에 관계없이 포함되어 있으면 설계변경심사 대상 사업임.
- ③ 서울시 계약심사 요청시 반드시 원가관리시스템 등록 후 계약심사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, 원가설계서 전산파일 제출시 JDL파일로 제출.
  - ※ JDL파일 : 시중 상용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설계내역을 시설공사원가계산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 호환규정

## □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

### 〈설계도서 작성 유의사항〉

#### ○ 내역서

- 각종 수량산출 근거(노임, 재료비, 경비 등 산출근거) 자료와 최종 원가계산서간 합수로 연계된 파일로 하여, 내용 수정시 자동계산 되도록 작성

#### ○ 일위대가표

- 노임단가, 표준품셈, 실적공사비, 기계경비 등은 당해연도의 것을 적용
- 일위대가, 노임량 산출서에는 비교란에 적용 품셈 조항 등 관련 근거를 명시

#### ○ 자재단가

- 전문가격조사기관의 가격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격정보 등 2개이상 기관의 가격을 조사하고 해당 페이지를 표시
- 견적가격을 적용시에는 2개소 이상 업소에서 가격을 조사 후 반영하고 견적서 사본 제출
- 제작을 수반한 견적은 도면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되, 세부상세 자재내역 역시 설계내역서 작성과 동일하게 자동계산화 되도록 작성

- 제출서류 미비(예 : 내역서 자동계산 미조치, 제출서류 미제출 등)시 보완요구
- 표준품셈과 거래실례가격 등을 활용하여 공사원가계산이 가능함에도 다수의 공종을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일괄 1식 처리시 보완요구
- 기타,인력 및 장비의 조합이 필요로 하는 공사는 해당 비율에 따른 물량을 적용하되 물량은 설계도면에 따라 인력과 기계부분을 명확하게 산출한다.  
[ 서울시 계약심사과-348호(2011.1.11) ] 예) - 인력10%+기계90% → 인력00m<sup>3</sup> + 기계00m<sup>3</sup>  
(임의비율은 단가산출에 명기되므로 추후 변경요인 발생시 설계변경 곤란)
- 중간집하장을 설계반영할 경우 정확한 위치와 운반거리를 물량내역서에 표기  
[ 서울시 계약심사과-348호(2011.1.11) ]
- 공사계약심사 요청시 별첨 1. 원가계산서를 반드시 첨부

※ 공사원가 제경비 등 산정에 수식 등의 오류로 원가계산 검증차원

- 설계용역 대가산출시(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) 별첨 2. 서울시 『기본·실시설계 통합발주용역 설계요율 조정 산출표』 준수
- 기통보한 계약심사사례 및 서울시 개선품셈 내용 등 준수하여 작성

## □ 기타 유의사항

- 공사, 용역, 물품 등 심사 요청시 심사요청서 공사개요 항목에 반드시 사업비 구성을 표기 할 것(예시 : 구비 :     천원, 국·시비 :     천원   총:     천원)  
특히 해당사업의 예산내역을 명확하게 기재

<예시>

사업명	예산액	예산과목	금액(단위:원)	비고
○○ 사업		시설비(401-01)		구비

- 계약원가 심사의뢰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 입력  
※ 기 시행한 재무과-363호(2012.1.10)“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 계약심사관리 기능 안내” 참조
- 설계변경 계약심사요청시 요청서식 준수(공사계약 심사요청서로 요청시 반려조치)
- 입찰참가자격명시( 예: 토목공사, 포장공사 등)